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56

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김영호·박선원·임호선

이재정 · 김동아 · 김준혁

김영환 • 이훈기 • 이병진

문정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법무부 훈령 「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」 및 경찰청 훈령 「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」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, 일당,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.

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, 일당,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, 참고인의 경우에는 '참고인 출석요구서' 등을 통해 "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"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,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,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,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(안 제221조제4항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, 일 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. 단,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참고인의 여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1조(제3자의 출석요구 등) ①	제221조(제3자의 출석요구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자는
	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
	비,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
	있다. 단, 허위의 진술을 하였
	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
	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
	<u>로 한다.</u>